

2001. 6. 26

# 조례안심사보고서

- 충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
-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증 개정조례안
-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-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
- 충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점업체설치에관한조례안
- 충주시도시계획조례증개정조례안

산업건설위원회

# 조례안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조례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충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	2001.6.5	6. 5.	6. 12.	6. 12.	농업정책과장
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	"	"	"	"	지역경제과장
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	"	"	"	"	지역개발과장
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	2001.5.10	5. 10.	5. 14. 6. 12.	"	지적건축과장
충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점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	2001.6.9	6. 11.	6. 25.	6. 25.	지역개발과장
충주시도시계획조례증개정조례안	"	"	"	"	"

## 2. 제안설명요지

### 가. 충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

#### 가. 제안이유

- 농촌근대화촉진법이 1996년 6월 30일자로 폐지되고 농지개량사업이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되면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기 위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- 기존조례 폐지

### 나.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#### 가. 제안이유

-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응자취급기관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충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-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도를 기존에 시금고에서만 응자 일선협약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시금고 및 시장이 협약을 체결한 일반 응자취급기관을 포함시켜 중소기업체에서 응자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확대시켜 줌으로써 중소기업체 대출편의를 도모
- 수안보관광특구 시설현대화자금의 응자업체가 시금고인 농협으로 되어 있어 수안보 사업자들이 신규로 농협을 거래함으로써 대출담보 물건설정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조례개정후 수안보지역의 금융기관에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응자취급기관을 확대코자 함.

### 다.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#### 가. 제안이유

-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이 1997년 7월 10일 대통령령 제15,432호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-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제1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일부 수정

#### 라.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

##### 가. 제안이유

- 2000. 1. 28. 법률 제6247호로 건축법 개정과 2000. 6. 27. 대통령령 제16874호로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충주시건축조례 개정 및 충주시도시계획조례로 이관된 관계조문을 정리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-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절차 및 수수료지급기준
-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으로 대지 안에 조경식재
-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의 비율
- 연면적 85㎡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

#### 마. 충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점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

##### 가. 제안이유

- 2000. 2. 9일 개정 시행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제4호의 단서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내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내에서 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의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

## 나. 주요골자

### ○ 식품접객업소의 설치가능지역을 정함.

- 1)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
  - 가.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
  - 나.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
  - 다. 유호저수량이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 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지역
  - 라.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, 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(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은 제외한다.
  - 바. 충주댐(본댐)의 계획홍수위선(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)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
  - 마. 충주댐(본댐)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휴 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
  - 사. 바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(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,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)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

### 2) 제한특례

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, 운영 되거나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

## 비.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

### 가. 제안이유

- 도시계획법시행령이 2001년 1월 27일 대통령령 제17,111호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미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.

### 나. 주요골자

- 상업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설치는 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한(안 제30조~제34조)
- 일반상업지역·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에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3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서는 90%이하로 하고 준주거지역에서는 80%이하로 제한(안 제59조제2항)
- "종전의 일반주거지역"중 옥외체육시설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형평성 및 조례제정취지에 맞도록 제5호의 운동시설에서도 제한(별표5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### 가. 충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

- 본 조례는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면서 농지개량 사업이 농어촌정비법으로 규정되어 조례로서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# 나. 충주시중소기업 육성기금 실치 및 운영 조례 중개정 조례안

- 충주시의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에 의거 응자취급 기관을 기존 시금고에 한해서 협약 체결하여 응자 알선토록 규정되어 있어
- 중소기업자들의 거래 은행이 각기 다르고 대출담보 물건 설정등 새로운 국면에 처하는 어려운 불편이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소 코자 응자취급기관을 확대하여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# 다. 충주시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중개정 조례안

- 본 조례는 상위법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및 규제개혁 정비계획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# 라. 충주시건축조례 개정 조례안

- 충주시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규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조문정비와 도시계획조례로 이관된 관계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되오나
- 조례안 제8조 제1항 제1호 ~ 제6호  
-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~ 제6호의 내용과 동일

○ 조례안 제8조 제2항 제1호

-가로내 연면적 500㎡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를 신설

○ 제9조 제5항

-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에게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건축허가는 100분의 20, (임시)사용승인은 100분의 30의 수수료 지급기준 및 수수료 예산확보

○ 조례안 제15조 및 제16조

-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 건폐율 기준 비율과 용적율의 기준비율

○ 조례안 제20조 제2항 “다”목

-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2호 “다”목과 내용을 같이 하면서 단서를 신설하여 아파트는 6m 이상

○ 조례안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

-시행령 제113조 제4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과 동일

○ 조례안 제22조 제1항

-현행 건축조례 제46조 제1항의 내용과 동일하면서 “4. 소각시설” 누락

○ 조례안 제23조 제1항, 제2항, 제3항

-제1항 1호~4호는 시행령 제121조 제1항 1호~4호의 내용과 동일하면서 제3항의 이행강제금 부과 회수 총5회

-시행령 제121조 제1항 관련 「별표15」의 제15호에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안 제2항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등

○ 이와 같은 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

## ○ 조례안 제3조제9항

“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”를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리를 삽입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됨.

## 마. 충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

### <입법취지>

○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단서 규정에 의거 준 농림지역내 수질오염 및 자연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로써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내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.

#### 1) 안 제2조(용어의 정의)

○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의 형성지역 및 설치가능 지역의 범위를 인근 건물 부지 및 기존의 외곽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로 정함.

#### 2) 안 제3조(설치대상시설)

○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“가”목에 의한 휴게음식점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,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이며

○ 같은 조항 “나”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,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임.

#### 3) 안 제4조(설치허용지역)

○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우리시의 특성과 충북도의 의견을 반영 코자 안 제4조제3호의 유효저수량을 20만m<sup>3</sup>로 조정 하였으며 안 제4조제6호 및 제7호의 충주댐 주변의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을 고려하여 조문 신설

#### 4) 안 제5조(식품점객업소의 재한특례)

-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식품점객업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
- 기존 건축물(건축물대장 등재)에 대해서는 동일 면적 동일 용도 범위안에서 대수선 및 개축이 가능토록 정함.
- 제6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의시 충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 설치에관한조례안으로 의결해 주신바 있으나 충북도의 검토결과 상위법의 입법취지위배 및 국민기본권파이제한을 이유로 재의 요구되어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부결하신 바에 따라 “준농림지역내 식품점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”로 다시 정하기 위해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북도의 의견 및 지적내용을 감안하여 상세한 설명 및 검토가 필요됨.

### 바. 충주시도시계획조례증개정조례안

#### <입법취지>

-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원,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상업지역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상업지역안의 대지에 대하여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건축제한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함.

#### 1) 상업지역안에서 숙박, 위락시설 건축제한(안 제30조~33조)

- 공원,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m 이내의 대지에는 건축을 제외하는 것으로 신설

#### 2) 제39조제3호중 “동법 제57조의3 제2항을 동법 제68조 제2항”으로 하는 것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2000. 1. 28일 법률 제6223호로 전문개정

### 3) 일반, 균린상업지역 및 준 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

- 영 제62조제3항은 일반상업지역 균린상업지역 또는 준 주거지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80%이상 90%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.
-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함은
  1.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
  2.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 의1에 해당하는 것
    - 가.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 가 15m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
    - 나.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가 각각 8m이상이고, 그 도로 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m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이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
- 위 법령을 근거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신설되는
  - 일반상업지역과 균린 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은 90% 이하로 하고
  - 준 주거지역에서는 80% 이하로 신설
- “종전의 일반주거지역”안에서 골프연습장 건축제한(안[별표5])  
별표5의 제1호에서는 제2종 균린생활시설중 옥외체육시설이 설치된 골프연습장(500m' 미만)에 대하여 건축제한을 하면서, 제5호의 “운동시설”에서는 설치 가능토록 되어 있어, 제5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체육시설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건축을 제한하여 형평성 및 조례제정 취지에 맞도록 개선
- 상업지역내의 위락, 숙박시설에 대한 주거지역으로부터 20m이내 설치 제한과 건폐율은 일반, 균린상업지역은 90%이하로 하고 준 주거지역은 80%이하등 지역별 주거환경 여건과 주민정서와 결부하여 상세한 설명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## 4. 질의.답변 요지

### 가. 충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

▶ 질의 :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이 폐지되면 새 조례가 제정되는 것인가?

○답변 : 폐지시키고 법령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것임.

▶ 질의 : 농촌근대화촉진법은 언제 폐지 되었는지?

○답변 : '96년 6월 30일 폐지 되었음.

### 나.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▶ 질의 :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시와 조흥은행이 각각 50%의 비율로 운영하는가?

○답변 : 우리 기금을 조흥은행에 예치하면 그것을 근거로 조흥은행에서 추가지원 운영하는 것임.

▶ 질의 : 수안보시설 개선자금 운영은?

○답변 : 수안보 노후시설 지원자금은 농협과 협의하여 농협자체 자금으로 운영함.

### 다.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: “없음”

### 라.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

▶ 질의 : 대지안의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을 주택도 포함시켜도 되는지?

○답변 : 충주는 도농 통합 시로서 검토해 보겠음.

### 마. 충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

▶ 질의 :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미 용시설도 할 수 있는지?

○답변 : 이 조례와 관계없이 건축법에 의거 적용받음.

### 바.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: “없 음”

## 5. 심사결과

가. 충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: 원안가결

나.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
다.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
라.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
마. 충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 : 원안가결

바.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
## 6. 붙 임

가. 충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부

나.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
다.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
라.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부

마. 충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 1부

바.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부